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며, 계약단가는 우리 소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률(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 가. 입찰 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 체결 시 상기방법으로 단가계약 됩니다.
 - 나.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이므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통신 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등급 B등급 이상(전년도기준)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 한 자
 -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제출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견적서 제출의 취소 및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5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의 건설사업 중 **평가등급 B등급 이상 업체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나’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불임]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익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용역 등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대전청홈페이지⇒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dcmo.mltm.go.kr/USR/BORD0201/m_20318/LST.jsp)]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등에 의합니다.
- 아.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03.1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

- 부조리신고는 ☎ 044-201-3091, www.molit.go.kr -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043-850-2523

[붙임]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주포~봉양 도로건설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